「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 한다)」 중 충돌시험기준이 개정됨(‘22.10.26)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 40킬로미터 미만 자율차 안전기준특례(안 별표3 제4호)

- 최고속도 40킬로미터 미만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규칙 제91조부터 제91조의4까지에 따른 충돌시험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의4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 (현행) 별표 3 안전기준 특례 성능확인기준 및 특례사유의 세부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3]

안전기준 특례 성능확인 기준 및 특례사유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3 (생략)

4. 최고속도가 40킬로미터 미만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2조의2, 제14조의2,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8호·제2항제4호·제5호·제6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8조의3제3호에 따른 낙하시험·진동시험·기계적충격시험·기계적압착시험·침수시험·연소시험·열충격시험,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02조의4,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및 제110조제2항을 제외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자동차규칙 제12조의2·제88조의2·제88조의3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타이어 상태(공기압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나. 자동차규칙 제107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부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할 것

1)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예, 원동기, 기어, 브레이크, 현가장치, 능동 조향장치, 속도제한장치 등)

2) 운전자 위치에 영향을 주는 기능(예, 좌석, 조향핸들 위치)

3)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주는 기능(예, 전조등, 앞유리 와이퍼)

4) 운전자/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예, 에어백 및 안전장치)

5) 운전자나 기타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등)

6) 청각기능(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등)

7) 자동차 법정 데이터 관련 기능(예, 운행기록계, 주행거리계 등)

8)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과 관련된 기능(예, OBC 등 충전관련 부품)

9) 기타 안전과 관련된 기능의 부품

다. 승합자동차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를 적용할 것

5. (생략)

□ [개정안] 별표 3 안전기준 특례 성능확인기준 및 특례사유의 세부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3]

안전기준 특례 성능확인 기준 및 특례사유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3 (생략)

4. 최고속도가 40킬로미터 미만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2조의2, 제14조의2,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8호·제2항제4호·제5호·제6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8조의3제3호에 따른 낙하시험·진동시험·기계적충격시험·기계적압착시험·침수시험·연소시험·열충격시험,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제92조,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02조의4,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및 제110조제2항을 제외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자동차규칙 제12조의2·제88조의2·제88조의3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타이어 상태(공기압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나. 자동차규칙 제107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부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할 것

1)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예, 원동기, 기어, 브레이크, 현가장치, 능동 조향장치, 속도제한장치 등)

2) 운전자 위치에 영향을 주는 기능(예, 좌석, 조향핸들 위치)

3)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주는 기능(예, 전조등, 앞유리 와이퍼)

4) 운전자/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예, 에어백 및 안전장치)

5) 운전자나 기타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등)

6) 청각기능(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등)

7) 자동차 법정 데이터 관련 기능(예, 운행기록계, 주행거리계 등)

8)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과 관련된 기능(예, OBC 등 충전관련 부품)

9) 기타 안전과 관련된 기능의 부품

다. 승합자동차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를 적용할 것

5. (생략)